

○ 소방용기계·기구의 형식승인, 제품검사 및 발령성능검사 등에 관한 현행의, 현행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

● 전자정부법(법률 제10012호) 제14조(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) 행정기관 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-- 수수료, -- 수입금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다. 행정기관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은 명시된(안 제17조 관련 별표 8)

○ 미비된 형식승인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1년으로 하여, 취소에 관한 기준을 정함

● 원형은, 행정처분기준(1차, 2차, 3차)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

라. 형식승인 및 민경승인에 관한 처리기준을 조정함

○ 별산기, 정동 및 스프링클러헤드(비금속물질)에 관한 습도시험과 부식시험 기준을 기 개정하되 기에 처리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준(안)을 마련함

● 별산기의 검정기준(고시 제2009-31호) 제16조의 2(습도시험)스프링클러헤드의 검정기준(고시 제2010-35호) 제11조(부식 시험)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정책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업종별 사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의견과 그 사유)

나. 실명(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○ 주 소 : 110-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동 145F-1 이아빌딩 1105호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

○ 전화 번호 : 02-2100-7385(팩스번호) : 02-2100-5389

○ 이 메 일 : a65042@korea.kr

라.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(<http://www.epeople.go.kr>) 정책도론 -민원자랑화-입법/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농촌진흥청공고제2010-105호

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결과

유론(유원회사 유론)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「기능성강화 콩(DF-305422-1)」은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물품고시」 제4-8조 및 제4-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「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」에서 심의한 결과 「비의도의 발음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」 되었으며, 그 세부적인 결과는 한국농업생명공학안전정보센터(nabc.nass.go.kr)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10년 11월 7일  
농촌진흥청장

●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-103호

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-210(10. 7. 30.)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변형독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(오이도 어우단지 및 추가단지 4차 조성)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.

2010년 11월 8일  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1. 사업의 명칭 : 변형독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(오이도 어우단지 및 추가단지 4차 조성)

2. 사업시행자의 주소·성명 : 대한법학사 태극구 연속동 연6-2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

3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오이도 지역 및 주변 공유수면

4. 준공 면적 : 21,578.5㎡

5. 준공인가 연월일 : 2010. 11. 2.

6. 사업시행 기간 : 1992. 8. 11. ~ 2010. 12. 31.

7.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

가. 토 지

구 분	면 적(㎡)	관리처분 계획	
공공시설	체육시설	2,009.5	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국가(국토해양부)에 무상 귀속
	공원	19,569.0	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(서울시)에 무상 귀속

나. 공공시설

구 분	규 격	단 위	수 량	관리처분 계획
1. 체육시설	오이도 추가선착장	식	1	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국가(국토해양부)에서 관리
2. 공 원	오이도기념공원	개소	1	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(서울시)에서 관리

● 권 고 도 서 :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(Tel.031-412-2842) 및 인천지방해양철안청, 서울시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급합니다.(산개도서는 게재생략)

●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-75호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족·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발령위한 무선국에 대한 정문(사전)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11월 8일  
서울전파관리소장